

## 중국의 중재법과 몽골의 중재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omparative Method of Arbitration Law of China and Arbitration Law of Mongolia

김용길\*\*  
Yong-Kil Kim

#### 〈목 차〉

- I. 서 론
  - II.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제도
  - III. 몽골의 중재법과 중재제도
  - IV. 중국과 몽골의 중재제도에 대한 개선점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중재합의, 중국의 중재, 중국의 중재법, 몽골의 중재법, UNCITRAL 모델법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최근 중국은 사회에 만연하려고 하는 부패를 혁파하는 것이 향후 국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 사회를 한 단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치열해지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부터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에 폐막된 중국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sup>1)</sup>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는 반(反)부패 개혁과 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자급 고위 관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들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개정된 감독조례를 발표했다.<sup>2)</sup> 이것은 중국 정부 지도부가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엄격한 자정(自淨)적 조치를 취했음을 의미하며 전면적인 중엄치당과 반부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내 감독에는 금지구역이나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주요 책임자들의 재산, 신상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적으로 무역이 점차 늘어나면서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sup>3)</sup>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인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투자기업이 급증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2012년부터는 민사소송 등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경영이 악화됨으로써 임금 지급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노동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제기 및 해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토지제도에<sup>4)</sup>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지역과 토지의 종류에 따라 등기절차 및 등기규칙 등이 상이하여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쉽지 않아, 부동산의 보유가 일부에게 편중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였으며, 부유층이나 관료들은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소산권주택(小產權房)인데,<sup>5)</sup> 소산권주택은 부동산소유권, 양도권, 처분권, 수익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저당이

1)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는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되어 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회는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중앙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능을 맡는다. 중앙위원회는 200명 안팎의 중앙위원(후보위원 170명)으로 구성된다.

2) 김혜원, 「아시아경제」, 2016.11.3일자.

3) 2016년 10월 11일에 홍콩 “일대일로” 국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제4회 ‘일대일로’ 국제 포럼: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 중국 내지, 홍콩 및 기타 국가와 지역의 전문가와 학자, 법관, 기업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했는데, 허룽(賀榮)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일대일로” 무역투자금융규모가 확대되면서 분쟁 역시 많아질 것이라 전제하면서, 그러한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화망 한국어판」, 2016.10.12일자.

4)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서 개인에게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는 도시 토지와 농촌 및 도시 교외 지역 토지로 구분되는데, ‘도시 토지’는 국유토지로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가지며, ‘농촌 및 도시 교외지역 토지’는 집체토지로 농민 집단체가 토지소유권을 가진다. 토지공유제 하에서 토지소유권은 임의로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없으며, 토지사용권의 형태로 사용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된다.

5) 소산권주택은 중국의 토지제도가 낳은 산물로서 일반 주택과 다르게 토지사용권증서나 부동산등기가 없어 한정적 권리를 갖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소유권(產權房)에 작을 소(小)자를 붙여 만든 것이다.

나 대출도 불가능하지만, 중국인들의 소산권주택에 대한 투기는 끝없이 일어나 엄청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이래 26년 동안 양국 대통령의 상호 방문과 함께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20여 가지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양국 교역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18일에 몽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울란바토르에서<sup>6)</sup> 몽골의 지도자들을 접견하고 양국간 교류 확대와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sup>7)</sup> 몽골의 대외무역은 최근에 선진 국가 및 동북아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는데,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향후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보다 중재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분쟁을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송은 결국 집행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여기에는 국가주권이라는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는 사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권으로서의 국가권력에 의한 재판제도와는 달리 소송절차 등이 완화되어 있으며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집행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간 무역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의 중재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몽골의 중재제도를 파악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인접국가인 두 나라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II.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제도

### 1. 중국의 중재제도의 개황

그동안 중국은 분쟁발생시에 그를 해결함에 있어서 형사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처리하고, 경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주로 ADR을 이용하여 해결하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분쟁이 많아지게 되자 중국의 주요 중재위원회는 국제섭외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ADR별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탐방 등

6)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자 몽골 산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최대 산업 중심지로서, 몽골 전체 인구인 299만명 중 137만명이 살고 있다.

7)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6월 29일에 치러진 총선에 따라 취임한 몽골인민당(MPP) 소속의 미예곰보 엔흐볼드 국회의장과 자르갈툴가 에르덴바트 총리를 각각 면담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야당인 MPP가 전체 76개 의석 가운데 6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몽골은 또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이원집정부제 정부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경제 등 내정을 관장한다. 몽골 헌법은 의회 내 다수당이 새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 및 의회 의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김형섭, 「Newsis」, 2016.7.18일자.

협상은 평균 6일 정도 소요되고, 조정은 평균 15일이 소요됨에 비하여 중재는 다소 긴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평균 275일 걸리는 소송에 비하면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중재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중재기관이 설립되었는데, 동법이 시행된 1995년 12개(당시 접수건수는 107건)에 불과하던 중재기관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에는 215개, 2014년에는 235개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그동안 중재기관이 주로 일반 사건을 취급하였지만은 이제는 특수한 분야인 의료, 사이버 공간, 특허 및 저작권, IT 분야에서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중재기관도 설립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을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을 알 수가 있다. 전국의 중재기관에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1999년은 152개의 중재기관에 총 7,394건이 접수되었는데, 2011년에는 215개 중재기관에서 88,473건이 접수되었고, 2014년에는 235개 중재기관에서 113,660건이 접수되어 1999년을 기준으로 중재기관은 약 15배 증가하고 중재안건도 약 15배를 상회하게 됨으로써 중재 사건이 2013년에 처음으로 연간 10만건을 돌파하게 되었다. 중재 총액도 1999년 167억 위안이었다가 2014년에는 2,656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중재사건과 동일하게 15배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건의 중재안건에 대하여 평균 약 234만 위안의 금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재 총금액은 2011년의 1,133억원에서 2014년에 2,656억 위안으로 늘어나, 3년만에 배증함으로써 중재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표 1〉 최근 5년 간 중국의 중재기관 현황

년도	중재기관수	사건 접수	중재총액(억 위안)
2010	209	78,923	932
2011	215	88,473	1,133
2012	219	96,378	1,315
2013	225	104,257	1,646
2014	235	113,660	2,656

출처: 沈四宝主編, 中國仲裁年度報告, 法律出版社, 2016.<sup>8)</sup>

## 2. 중국 중재법의 제정

중국의 중재제도는 1950년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는데 그 이후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합작 투자 관련 분쟁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31일에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8) 沈四寶·于健龍, 中國仲裁年度報告(2013~2014), 「法律出版社」, 2016, p.6.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sup>9)</sup>을 제정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재법은<sup>10)</sup>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반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뉴욕조약, 워싱턴조약 등 국제조약, UNCITRAL 모델법, ICC 중재규칙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의 중재제도를 일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1)</sup> 이에 따라 법치주의 원칙의 수립, 사유화의 촉진, 자유로운 계약법 원리의 도입, 독립재판의 강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인 법제 정비를 진행해 왔으며<sup>12)</sup>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유재산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제도 및 법률들이 부족하였으나<sup>13)</sup> 헌법 개정을 통하여<sup>14)</sup>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2007년 3월 16일에 물권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함으로써 강제적인 법규범으로서 작용을 한다. 중재법은 중재계약, 중재기구,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집행 등 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그 하위규범으로 중재규칙이 있다. 중재규칙은 중재에 관한 절차법규이지만 중재법에 규율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중재법은 중재법시행이전에 제정된 중재관련 규정이 중재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중재법 제78조). 중국의 중재규칙으로涉外중재에 적용되는 것은 CIETAC의 중재규칙과 CMAC의 중재규칙이 있고, 일부 지방중재위원회는 별도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다.

### 3. 중재규칙의 제정

중재규칙은 중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규범으로서 성질을 가지는데 이는 중재기관이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정한 중재규칙과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한 중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16)</sup> 중국의 중재기구는 국내중재기구와涉外중재기구로 나누어지며,<sup>17)</sup> 국내중재기구로는 중재위원회가 있고,涉外중재기구로는 국제

9)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을 이하에서는 ‘중재법’ 또는 경우에 따라 ‘법’이라고 한다.

10) 중재법의 제정 이전에는 중재제도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4개의 법률, 80여 개의 행정법규, 200여개의 지방성 법규가 존재하였다.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仲裁研究』, 제15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05, p.116.

11)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律釋評』, 法律出版社, 1996, p.1.

12) 李衡東, “相互性による法とその執行”, 『神戸法學雜誌』, 第46卷 4号, 神戸法學會, 1997, p.629.

13) 梁慧星, “關於中國民法典編纂”, 『法制研究』, 第2號, 韓國法制研究院, 2002, p.205.

14) 중국 정부는 2004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개정헌법 제13조에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15) 김용길, “中國의 仲裁制度에 관한 管見-中國 物權法の 制定을 中心으로-”, 『仲裁研究』, 제17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07, p.122.

16) 김용길, 전계논문, p.131.

17) 국내 중재와涉外중재는 중재절차(程序)와 중재규칙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중재위원 명단 및 중재 판정(裁決)의 집행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江平, “中國의 仲裁制度”, 『仲裁研究』, 제13권 1호, 韓國仲裁學會, 2003, p.14.

경제무역중재와 해상중재로<sup>18)</sup>구분된다.<sup>19)</sup>국내중재에 대해서 중재규칙을 1956년에 제정한 후 1988년, 1994년, 1995년 등 7차례에 걸쳐 개정·시행되고 있다. 국제경제무역중재에 대해서는 1954년 5월 4일에 제215차 정무회의에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그 후 1956년 3월 31일에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무역분쟁을 중재하는 기구가 북경에 설립되었다. 그 후 1979년에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이라 한다)로 확대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1986년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중재법이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995년 10월 1일에 CIETAC의 중재규칙을 개정하였고,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재규칙은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후 2012년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으나 CIETAC과 상해지부<sup>20)</sup> 및 화남지부<sup>21)</sup>와의 갈등이 유발되었다. CIETAC은 2015년 1월 1일부터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긴급중재인절차, 당사자의 추가, 중재병합제도 등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 4. 중재규칙의 개정

##### (1) 2012년 중재규칙 및 상해 중재규칙

CIETAC은 중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중재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사자들에게 중재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sup>22)</sup>당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생산거점이 되었는데 중재사건이 급증해지자 중재규칙의 국제화추세를 반영하고 중재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CIETAC의 상해지부와 화남지부는 본래 각각 독립된 행정 및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 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북경중재위원회와 각 지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려던 CIETAC의 목적이 결국 각 지부들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즉 2005년 중재규칙 제2조 제8항에는 “쌍방 당사자는 그 분쟁을 북경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북경에서 중재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고 또한 그 분쟁을 화남지부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천에서 중재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또는 그 분쟁을 상해 지부 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상해에서 중재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없으면 신청인이 선택하여 북경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거나 또는

18) 1958년에는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 CMAC)가 설립되었다.

19) 이 두 중재기구는 민간기구로 전문적으로 섭외안건을 수리한다. 중국의 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르며, 주요 수리안건은 中外合資企業, 合作企業의 분쟁과 무역분쟁이다. 江平, 前揭論文, p.12.

20)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上海分會(現已更名爲上海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1)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華南分會(現已更名爲華南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22)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中國國際商會 2012년2월3일修訂并通過, 2012년5월1日起施行.

화남지부에서 중재하거나 또는 그 상해지부에서 중재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러나 2012년 중재규칙 제2조 6항에는 “중재합의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북경중재위원회 비서국이 중재신청을 접수하거나 사건을 관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2005년 중재규칙에서는 CIETAC과 각 지부가 동등한 관계였지만, 2012년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합의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CIETAC이 사건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상해지부와 화남지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 후 양기관들은 계속적인 갈등을 보였으며 결국 2013년 10월 22일에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SHIAC)는 상해자유무역지역에 중재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지속되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3년 9월 4일에 “최고인민법원 중재 사법심사 안건의 정확한 심리에 관한 문제의 통지”<sup>23)</sup>반포함으로써, 최고인민법원에 대한 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법적 판단을 이루도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렇지만 SHIAC는 2014년 4월 8일에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때 SHIAC는 중재규칙<sup>24)</sup> 등을 상해시 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중재사건의 처리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여 북경중재위원회 다음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 후 최고인민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2015년 7월 17일 회답(批复)에서 이 회답을 발표하기 이전에 체결된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上海分會에서 중재를 하도록 하는 중재조항이 당사자 사이에 명기된 경우에는 CIETAC에 관할권이 있으며,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SHIAC에 중재를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SHIAC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였다.<sup>25)</sup>

## (2) 2015년 CIETAC 중재규칙의 개정

### 1) 긴급중재인 절차의 신설

중국의 2015년 CIETAC 중재규칙은<sup>26)</sup> 중재판정부에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에 대한 결정권을 새롭게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권한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6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신설된 2015년 중재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국법률에 따

23) “분쟁사건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사건 또는 당사자가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에, 상해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화남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하에서 내려진 중재판단에 대하여 취소 신청한 사건을 각 지역의 인민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심판위원회에서 거친 토론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최고인민법원은 각 지역의 인민법원에서 제출한 토론의견을 검토한 후 회답을 한다. 그 후 각 지역의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을 받아 판단을 내린다”. 最高人民法院關於正確審理仲裁司法審查案件有關問題的通知(法[2013]194号).

24) SHIAC 중재규칙 제21조는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긴급중재제도를 설립하였고, 제3자의 중재절차 참가, 우호적 중재 그리고 소액분쟁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25) 最高人民法院關於對上海市高級人民法院等就涉及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及其原分會等仲裁機構所作仲裁裁決司法審查案件請示問題的批复(2015年6月23日 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1655次會議通過, 法釋[2015] 15号. 自2015年7月17日起施行.

26) 2014年11月4日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中國國際商會修訂并通過, 自2015年1月1日起施行.

라 보전신청을 한 경우에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지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당사자의 보전신청을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자는 CIETAC의 긴급중재인절차에 의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인(仲裁委員會仲裁院)에 긴급한 임시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긴급중재인(緊急仲裁員)은 필요하거나 긴급한 임시구제 조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양당사자를 구속한다(동조 제2항).<sup>28)</sup> 이러한 긴급중재인제도는 새로운 제도이며, 일방당사자에게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존재하거나, 중재판정이 유효하게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해당 중재기구에 긴급중재인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sup>29)</sup> 이러한 긴급중재인제도는 실질적인 보전조치를 통하여 당사자의 재산이나 증거를 사실 그대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재규칙 제23조 제3항은 일방당사자가 청구한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관련 법률이나 당사자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거나 적절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시조치를 청구한 일방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sup>30)</sup>

## 2)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추가

2015년 CIETAC 중재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우선 중재절차 중에서 일방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당사자를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추가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여 추가할 수 있다(제1항). 둘째 당사자 추가신청서는 기 중재사건의 번호를 포함하고, 추가된 당사자가 포함된 모든 당사자의 명칭, 주소 또는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의 사실과 이유 내지 중재청구를 명시해야 한다(제2항). 셋째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결정하며(제3항), 추가당사자에 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인(仲裁院)이 중재절차의 진행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의 진행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제4항). 넷째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당사자가 추가된 경우 추가된 당사자는 중재인의 선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당사자가 추가된 경우에 추가된 당사자는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

27) 第二十三條 保全及臨時措施(一) 當事人依據中國法律申請保全的, 仲裁委員會應當依法將當事人的保全申請轉交當事人指明的有管轄權的法院。

28) (二) 根據所適用的法律或當事人的約定, 當事人可以依據<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緊急仲裁員程序>(本規則附件三)向仲裁委員會仲裁院申請緊急性臨時救濟。緊急仲裁員可以決定採取必要或適當的緊急性臨時救濟措施。緊急仲裁員的決定對雙方當事人具有約束力。

29)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 25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5, pp.51~52.

30) (三) 經一方當事人請求, 仲裁庭依據所適用的法律或當事人的約定可以決定採取其認為必要或適當的臨時措施, 並有權決定由請求臨時措施的一方當事人提供適當的擔保。



다.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규칙에 제29조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제5항). 다섯째 추가된 당사자의 답변제출 기한과 반대청구의 기한은 그가 추가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기산(起算)하며(제6항), 사건에 관한 중재협약이 표면상 추가된 당사자를 구속(約束)할 수 없거나 기타 당사자의 추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중재위원회는 추가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다.

### 3) 보완된 중재병합제도

2012년에 CIETAC 중재규칙 제17조에 있던 중재병합(合并仲裁)제도를 2015년 CIETAC 중재규칙에서는 제19조로 옮기면서 중재절차 중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여러 의견과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2개 또는 2개 이상의 중재사건을 하나의 중재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된 중재사건이 서로 연관되거나, 중재합의의 내용이 중복 또는 동일하여 법률관계도 같은 경우 또는 관련된 여러 계약이 주종관계로 되거나, 모든 사건 당사자들이 병합중재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1항). 이에 따라 중재병합을 결정할 경우에 중재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의견 또는 관련 다른 사건의 중재인의 선정 및 지정 상황을 포함하여 중재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제2항),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에 병합된 중재사건은 최초에 시작하는 중재절차의 중재사건과 병합하도록(제3항) 하고 있다. 중재사건이 병합된 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중재위원회 중재원(仲裁院)이 절차 진행에 대하여 결정하고,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제4항).

## 5. 민사소송법 및 사법해석

중국의 경우에도 중재절차에 있어서 재산보전, 증거보전, 중재판정의 심사, 중재판정의 집행에는 중국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5조에는 양당사자가 분쟁발생시 계약 체결지, 원고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등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심급관할과 전속관할은 위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재는<sup>31)</sup>지역관할의 제한이나 심급 및 전속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sup>32)</sup> 중재의 시효에 대하여 중재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상 시효의 규정을 적용하는데,<sup>33)</sup>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중재신청 시에 소송제기와 동등한 소송

31) 민사소송법 제255조는 “섭외경제무역, 운수 및 해사간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중재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국 중재섭외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의 중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江平, 前掲論文, p.14.

시효 중단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4)</sup>그 외에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을 제정할 때는 중재법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민사소송법도 고려해야 하는데<sup>35)</sup>이는 중재로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중국 법원이 중국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소송법은 중재법 및 중재절차의 보루라고 할 수 있지만,<sup>36)</sup>사법부의 간섭이 지나쳐서 중재제도의 특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재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을<sup>37)</sup>통하여 중재합의에서부터 판정의 집행과 취소에 이르기까지 중재 관련된 법률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sup>38)</sup>즉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문제,<sup>39)</sup>중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sup>40)</sup>등과 섭외중재와 외국중재의 사법감독을 위하여 사법해석을 통하여 인민법원에서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를 처리하는 문제,<sup>41)</sup>당사자의 중재판정 취소사건의 심리 문제,<sup>42)</sup>섭외중재를 취소하는 문제<sup>43)</sup>등에 대한 내부보고제도를 구축하였다. 특히 CIETAC과 화남(華南)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SHIAC 사이에 관할권 다툼으로 발생한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집행거절 및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분쟁 사건 등에서도 내부보고제도를 활용하여 중국의 각 지역 법원의 재판기준을 통일하였다.<sup>44)</sup>2015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중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에는 외국중재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sup>45)</sup>이 사법해석은 관할, 증거, 소액소송, 공익소송, 1심, 2심, 재판감독절차 등 제도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는데 제27조와 제93조에서 중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33) 중국 중재법 제74조.

34)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民事案件適用訴訟時效制度若干問題的規定(2008年8月11日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1450次會議通過) 法釋[2008]11號, 제13조.

35) 중국 중재법 제15조, 제73조, 제75조.

36) 李萬熙, “새로이 제정된 中國의 仲裁法에 관한 연구”, 「법조」, 482호, 1996, pp.42~43.

37)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若干問題的解釋》已于2005年12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1375次會議通過, 現予公布, 自2006年9月8日起施行。(法釋[2006]7號)

38) 오원석·김태경, “중국상사중재의 사법감독실태와 개선방안”, 「仲裁研究」, 제20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0, p.104.

39) 《最高人民法院關於確認仲裁協議效力幾個問題的批復》已于1998年10月21日由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 第1029次會議通過, 現予公布, 自1998年11月5日起施行, [1998] 27號.

40)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若干問題的解釋》已于2005年12月26日由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1375次會議通過, 現予公布, 自2006年9月8日起施行. 二〇〇六年八月二十三日, 法釋[2006]7號.

41)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處理與涉外仲裁及外國仲裁事項有關問題的通知, 發文單位: 最高人民法院 法經發[1987]5號, 發布及執行日期: 1987.4.10.

42)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當事人申請撤銷仲裁裁決案件幾個具體問題的批復(1998年6月11日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992次會議通過, 自1998年7月28日起施行).

43)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撤銷涉外仲裁裁決有關事項的通知(法[1998]40號), 1998年4月23日.

44) 最高人民法院關於正確審理仲裁司法審查案件有關問題的通知(法[2013]194號). 中華人民共和國最高人民法院 2013年9月4日.

45)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的解釋 法釋[2015]5號, 《最高人民法院關於適用〈中華人民共和國民事訴訟法〉的解釋》已于2014年12月18日由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1636次會議通過, 現予公布, 自2015年2月4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5年1月30日.

## 6. 중국 중재법의 주요 내용

### (1) 중재법의 적용범위 및 조직

중재법 제2조는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등 평등한 권리주체 사이에 발생한 계약상의 분쟁과 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sup>46)</sup> ‘계약상의 분쟁’에는 매매 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 화물운송계약, 가공수주계약, 창고보관계약, 임대차계약, 리스계약, 기술계약 등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고,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에 대한 분쟁이 포함된다.<sup>47)</sup> 그러나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쟁의 등에 관한 분쟁은 제외되며, 노동쟁의나 농업도급계약 분쟁은 중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중재조직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중재협회 및 중재판정부, 중재인으로 이루어진다. 중재위원회의 정관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제정되는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으며, 중재위원회 사이에도 예속관계가 없다(법 제14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市에 설립할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 區를 둔 기타 市에 설립할 수도 있으나, 행정구획별로 모두 설립하지는 않는다(법 제10조). 중재법상 중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정한 자를 초빙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3조).<sup>48)</sup>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도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 제67조). 이와 같이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중재인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등이 현재 중국 인민법원 법관들의 수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심리절차

중재판정부는 3인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合議仲裁庭과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獨任仲裁庭으로 구분된다.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하거나 합의하에 중재위원회 주임(仲裁委員會主任)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은<sup>49)</sup> 중재합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 중재절차의 개시여부 결정, 중재의 공개 여부와 연기여부의 결정, 필요한 경우에 증거수집권<sup>50)</sup>,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조정권(법 제51조), 중재판정권(법 제53조) 등이 있다. 한편, CIETAC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46) 黃進·宋連斌·徐前權, 「仲裁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p.23.

47) 李萬熙, 前掲論文, p.31.

48) 劉曉紅·袁發強, 「國際商事仲裁」, 北京大學出版社, 2010, pp.180-187.

49) 仲裁庭의 權能에는 證據의 許容性, 關聯性, 重要性 내지 證明能力을 결정하는 權能이 포함되어 있다. 胡光輝, 「國際商事仲裁管理をめぐる 實效性の確保-中國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 證據と暫定的保全措置を中心に-」, 「早稻田大學法學會誌」, 제55권, 早稻田大學法學會, 2005, p.189.

50) 중재에 있어서 證據책임은 완전히 당사자에게 있다. 胡光輝, 前掲論文, p.192.

때문에 당사자자치가 제약을 받고 있다.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중재시효를 지켜야 하는데, 중재법 제74조는 “법률에 중재시효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소송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중재신청이 제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중재법 제28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으며 (중재규칙 제23조)<sup>51)</sup>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sup>52)</sup> 다만, 당사자 사이에 구술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서류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국가비밀에 관계된 경우도 동일하다.

### (3) 중재판정 및 집행

중재판정(裁決)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다수결에 따라 내려지며 소수 중재인의 의견은 중재판정서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sup>53)</sup>다수의견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중재인(首席仲裁員)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법 제53조).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데, 仲裁院 院長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판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48조).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중재할 때 이미 분명히 밝혀진 일부분 사실에 대해 먼저 판정할 수 있는데(법 제55조), 중재판정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간판정(部分裁決)을 할 수 있으며 중간판정이 중국적인 경우에는 양당사자를 구속한다(중재규칙 제50조). 중재법 제58조는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없는 등 일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인민법원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며, 특히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면 반드시 중재판정을 취소해야 한다. 중재법 제62조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른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중재판정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중재의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판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를 들어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불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하고 이유가 있다면 중재판정의 불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62조).涉外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를 들어 그것을 증명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법 제70조), 중재판정의 불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법 제71조).

51) 中華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 제258조.

52)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중재인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가를 당사자에게 개시하고, 그 점에 관한 인식을 공동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小島武司, 「仲裁法」, 靑林書院, 2000, p.230.

53)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중재판정의 집행을 확보 등이 요청되어 보전조치는 필요불가결하다. 중재정에 보전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胡光輝, 前揭論文, p.214.

### Ⅲ. 몽골의 중재법과 중재제도

#### 1. 몽골의 개황

오늘날 몽골은<sup>54)</sup>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10위권의 자원부국으로 한때 광업이 몽골 수출의 84%를 차지하기도 하였고<sup>55)</sup> 2009년에는 GDP의 20%를<sup>56)</sup> 기록하였는데,<sup>57)</sup> 우리나라와 몽골은 1990년 3월 25일에 수교를 하여 오늘날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양국이 수교를 맺기 전에는 미미했던 교역규모는 계속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4억 3천만 달러의 수출을 시현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광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몽골의 풍부한 미개발된 자원에 매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별 몽골의 투자건수에서 한국은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2,100 여건을 기록함으로써 총투자건수 대비 17.8%를 나타내고 있다.<sup>58)</sup> 이와 같이 몽골에 대한 상거래 교역과 투자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추세이지만 몽골과의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은 몽골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기보다는 겨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며 몽골의 외환보유고도 부족한 편이다. 특히 몽골에서는 정권의 유지와 정치상황이 불확실하여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로 인하여 협상 지연 및 내용 바꾸기, 공기 지연, 수출입 물품의 통관 지연 등의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많은 사건들이 중재제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몽골 관련 중재건수는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총 4건이 접수되어 그 중 3건은 중재판정으로 처리되었으며 1건은 화해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였다.<sup>59)</sup> 현재까지는 많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교역과 투자규모가 확대된다면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54) 몽골은 1990년에 구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사회주의체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급속하게 이동되어 왔으며, 2015년 현재 세계 약 150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다.

55) 주로 광산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의 무역수지는 오랫동안 적자가 지속되다가 2006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몽골은 다자간 협정 체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과 무역협정을 이용하여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관계 증진 등을 추구하고 있다.

56) 몽골의 무역은 1990년 이전에는 전세계 수출비중이 0.003%였으나 2014년 기준으로 0.03%를 기록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57) Enkh-Amgalan Myagmar, Legal implication of three-tier regime of stability in Mongolia, Mongolian Law Review, National Legal Institute, 2011, p.81.

58) 몽골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나라는 중국으로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비중이 월등히 높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별 몽골의 투자건수에서 한국은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투자가 많은데 이러한 비중은 중국의 49.1% 다음으로 2위의 투자건수이다. 유병욱, “한국과 몽골의 무역과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貿易商務研究』,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pp.498~500.

59)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23권 제4호, 韓國仲裁學會, 2013, p.60.

## 2. 몽골 중재제도의 역사

몽골의 법은 5000여년 동안 몽고사회의 전통 형성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 발전하여 왔다. 몽골제국이 태동하면서부터 몽골에도 본격적인 법의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때부터 몽골의 법적체계는 3단계를 거치면서 지속하여 왔다. 첫 번째 단계는 몽골제국의 법적 형성기로서 몽골제국이 태동된 1206년부터 1634년까지이다.<sup>60)</sup> 두 번째 단계는 몽골의 제2기 법전 편찬화시기로 1640년부터 1921년까지이다.<sup>61)</sup> 세 번째 단계는 몽골의 법적 체계의 발전기로서 1921년부터 현재까지이다.<sup>62)</sup> 몽골 법적체계의 전통과 역사는 매우 다양하다.<sup>63)</sup> 몽골은 1206년부터 태동된 제국시대에 전 지구 토지면적의 22%에 달하는 광활한 국가를 지배·유지하면서, 각기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지닌 다양한 부족과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서로 조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치기술이 성숙되어 조정의 개념이 발달되어 왔으나,<sup>64)</sup> 몽골제국이 무너진 1691년부터 1911년 사이에 청나라의 지배와 구 소련의 지배로 조정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1921년에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4년부터는 구 소련법의 계수가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sup>65)</sup> 몽골에서 법률문제들이 새롭게 대두하게 된 것은 1920년경부터 무역과 의류 제조업 등이 발달하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관련 산업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가경제를 부흥시키고 국제무역을 증대하기 위하여 1924년에 몽골 헌법이 제정되고 1926년에 몽골 민법이 제정되었다. 1925년 11월에는 ‘법원의 설립에 관한 결정’과 ‘법원조직에 관한 결정’이 발표되었고, 1926년 7월 2일에는 ‘몽골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몽골의 중재제도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sup>66)</sup> 당시에 몽골에서도 많은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중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되었으므로 1930년에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1940년까지 10년 동안 중재제도가 시행되었다. 몽골 헌법의 제정으로 1940년에 몽골의 법률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60) 이 시기에 몽골에서는 ‘Yasaa’라고 잘 알려진 소위 징키스칸의 Great Zasag Law를 최초로 성문화하여 통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몽고제국을 통치하였다. Yuan 제국의 법은 그 후 몽고제국의 동부아시아를 지배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Narangerel Sodovsuren, *Mongolian legal history and legal development*, *Mongolian Law Review*, National Legal Institute, 2011, p.136.

61) 이 시기에는 1640년에 제정된 Mongolian-Oirat Law와 1709년에 제정된 Khalkh Juram Law의 형태로 남아 있었으며 이 때에 몽골사회에서 사람들의 사회생활관계를 법적으로 강화시켜주고 보장하여 주었다. Narangerel Sodovsuren, *op. cit.*, p.143.

62) Amarsanaa Jugnee, *Recent trend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legal system of Mongolia*, *Mongolian Law Review*, National Legal Institute, 2011(1), p.118.

63) Munkhtuya Nyamsuren, *Mediation in Mongolia and related legal reform*, *Mongolian Law Review*, National Legal Institute, 2012(2), p.5.

64) Munkhtuya Nyamsuren, *op. cit.*, p.5.

65) 김선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무역보험연구」, 통권 제15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p.187.

66) 김석철, *전계논문*, p.61.

있었으며, 중재제도도 이때에 많이 개선되었는데, 1940년 10월 11일에 몽골중재원이 설치되었다. 전통적으로 중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몽골은 1949년 제정한 ‘법원 조직에 관한 결정’에서 법원은 중재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분쟁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들을 해결한다고 규정하여 각종 분쟁해결에 있어서 중재친화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1960년 7월 2일에 몽골 중재법원(Mongolian National Arbitration Court :MNAC)이 설립되었고,<sup>67)</sup> 동시에 몽골 상공회의소(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MNCCI)는 그 산하기구에 1인의 중재인으로 발족된 몽골상공회의소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ssion of the Mongolian Chamber Council of Commerce and Industry)를 설치하였다. 1962년에 몽골 중재위원회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따른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중재위원회(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중재규칙을 제정하였으며,<sup>68)</sup> 1967년에 몽골 중재법원은 몽골 최초로 분쟁을 중재로<sup>69)</sup>해결하였다.<sup>70)</sup> 1972년에 상호경제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s Assistance: COMECON)의 회원 국가들은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 및 무역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협약이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중재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에 동일한 중재규칙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몽골도 1975년에 이 협약을 수정하여 국내법으로 채택하였고, 1986년에는 몽골상공회의소 내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대외무역중재법원(Foreign Trade Arbitration Court: FTAC)으로 격상하였다.

### 3. 몽골의 대외무역중재법

몽골에서도 대외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몽골은 1990년에 전체주의 제도(totalitarianism regime)와 계획경제제도를 폐지하였고,<sup>71)</sup> 1991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sup>72)</sup> 사유재산제도를<sup>73)</sup> 인정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법률과 정치에 대한 개혁을

67) Batzaya Bodikhun and Petr Yuen, op. cit., p.92.

68) 김선정, 전개논문, p.188.

69) 1967년에 첫 번째 중재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된 이후에 1990년까지 연평균 15건의 분쟁을 해결하였다. 상계 논문, p.188.

70) Batzaya Bodikhun and Petr Yuen, op. cit., p.92.

71) ibid, p.93.

72) 199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헌법은 국명을 Mongolia로 변경하고 3권 분립을 토대로 대통령 직선제, 단원제 국회 및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73) 몽골 헌법 제5조 (1) 몽골은 보편적 세계경제정세와 국가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유의 형태에 기초한 경제를 추구한다. (2) 국가는 모든 형태의 공, 사유개념을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소유자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모든 형태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규제를 한다. (5) 모든 가족은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행하였다. 특히 헌법 제5조에서 국가는 모든 형태의 공·사유개념을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유자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비약적인 국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에 몽골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정하고 기능적인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친화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정책을 강화했는데 그러한 계획에 중재제도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몽골 의회는 1995년에「대외무역중재법(Foreign Trade Arbitration Law: FTAL)」을 제정하였다. 대외무역중재법으로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적으로 각국과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이 법은 FTAC에 대하여 몽골의 국제중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그 관할을 외국인과 몽골인 사이의 분쟁이나 외국인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한정하였다.<sup>74)</sup> 즉 이 법은 국제무역 분쟁에 관한 경제와 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국내 분쟁은 여전히 법원에서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대외무역중재법은 당사자의 비밀유지를 위한 제한 규정과 함께 개방적인 중재청문과 공개적인 판정을 규정하였지만,<sup>75)</sup>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즉 중재절차에서도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때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법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 4. 몽골 중재법의 제정

1995년에 제정된 대외무역중재법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몽골 국회는 2003년 5월 9일에 ‘1985년 UNCITRAL 모델 중재법’을 토대로 새로운 몽골 중재법(Law on Arbitration)<sup>76)</sup>을 제정하였다.<sup>77)</sup> 중재법은 당사자의 선택과 자치를 강조하면서 대외무역중재법에서 규정하지 않던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을 받아들였으며, 국제분쟁과 국내분쟁을 모두 중재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중재법은 당사자가 몽골인인 내국인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몽골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중재에도 적용된다.<sup>78)</sup> 아울러 새로운 중재법에 따라 “알선규칙”, “임의중재규칙” 등이 제정되었으며 2003년 6월 16일에는 새로운 “중재규칙”이 제정되었다. 몽골에서는 중재기관들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 상

74) Foreign Trade Arbitration Law. Art 6.

75) Foreign Trade Arbitration Law. Art 13.

76) 이하에서 몽골 중재법을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재법’ 또는 ‘법’으로 약칭할 수 있으며, 조문을 열거하거나 표시한 경우에는 그것이 몽골 중재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본다.

77) Batzaya Bodikhun and Petr Yuen, op. cit., p.94.

78) Arbitration Law. Art 3.1.



설중재기관은 몽골 상공회의소(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산하에 있는 몽골 국제 및 국내중재센터(Mongolian International and National Arbitration Center: MINAC)만이 설립되었다. 현재 MINAC은 전국에 21개 중재센터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79)</sup>몽골에서 중재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은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sup>80)</sup>한편 몽골은 ‘1958년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몽골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체약국 사이에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몽골 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몽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며 평화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며,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이의 비준이나 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 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몽골은 이에 따라 1994년 10월 24일 뉴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1995년 1월 22일에 발효하였다.

## 5.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

### (1) 몽골 중재제도의 法源

몽골의 중재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法源으로는 우선 2003년에 제정된 몽골 중재법이다. 몽골 중재법은 제8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중재규칙이 적용되며, 몽골 헌법, 2002년에 제정된 민법(Civil Code), 2002년에 제정된 민사소송법, 2002년에 제정된 법원집행법(Law on Court Enforcement)도 적용된다. 아울러 중재합의 조항,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외국 법률 적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신청, 대법원에서 내린 대한 해석, 대법원에서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권고, 회계 분쟁에 관한 비용을 계산 규칙, 회계 분쟁을 해결에 관한 규칙, 중재비용 규칙, 알선 절차 등도 적용된다. 또한 현재 몽골 중재에서 적용되는 국제조약으로는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모델 중재법’,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sup>81)</sup>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워싱턴협약’,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수행 국가간 민사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1972년 모스크바협약’, ‘1980년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등이다. 몽골 당사자를 포함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을 우선하고 있다.<sup>82)</sup>

79) Batzaya Bodikhun and Petr Yuen, op. cit., p.100; www.molgolchamber.mn/en/.

80) ibid, pp.93~94.

81) 몽골은 1958년 뉴욕협약의 서명국이고, 몽골에서 내려진 1,995건의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의 비준국인 158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집행되거나 몽골에서 집행되었다. 김선정, 전계논문, 194면.

## (2) 중재 대상과 중재합의

몽골 중재법은 개인 및 법인 등 당사들 간에 발생한 유체물(material property)과 무체물(non-material property)에 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sup>83)</sup> 따라서 중재합의 등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3.3항<sup>84)</sup>과 법원 및 국가 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은 중재의 관할이 아니며(제7.1조), 재산권이 아닌 형사사건, 친족 간의 사건 등도 중재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법, 몽골 국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민과 법인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법 제6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중재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몽골에서 중재합의는 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제11.1조). 중재는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근거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제11.2조).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가능하며, 설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법원이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효력을 확인하여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제12.1조). 중재합의의 방식은 UNCITRAL 모델중재법처럼 유효한 중재합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합의는 당사자간 서면으로 증명한 독립된 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양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일방이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다투지 않는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간주된다(제11.3조) 그러나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이 규정한 전자통신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재합의가 그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다른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중재조항은 효력이 있다(제11.5조).

## (3)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권한

몽골 중재법이 중재인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Member of Constitutional Court), 판사(Judge), 검사(Prosecutor), 등기인(Case registrar), 수사관(detective), 집행법원의 직원(Officer of court enforcement) 및 종전에 어느 일방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공증인이었거나 변호인이었던 자이다.<sup>85)</sup> 그 이외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중재인으로 지명될 수 있으며(제15.1조),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중재인수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인수를 합의하지 못

82) Arbitration Law. Art 2.2-2.3. 이하에서 법령의 표기 없이 각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를 '몽골 중재법'의 해당 조항이라고 본다.

83) Arbitration Law. Art 1.1.

84) 민사소송법 제13.3항. 당사자간에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없거나 정부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법원에서 처리한다.

85) Arbitration Law. Art 15.2. 우리나라 중재법이나 모델중재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하면 3인으로 하되(제14.3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제15.4조). 1인 중재의 경우 분쟁당사자는 상호 합의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으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이 선정하게 된다.<sup>86)</sup>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첫째 중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중재인의 독립성과 중립성, 셋째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한다.<sup>87)</sup> 중재인이 결정되면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1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기권한 결정권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하는 항변은 변론진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그 때마다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중재판정부는 예비적(preliminary question) 또는 중재판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sup>88)</sup> 중재인이나 중재기관의 책임이나 면책에 관하여 몽골중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에도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제20.7조),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appropriate security)의 제공도 명할 수 있다.<sup>89)</sup>

#### (4) 몽골의 중재절차

중재절차에서 양당사자는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를 받아야 하며<sup>90)</sup> 청구, 방어,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sup>91)</sup> 중재절차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제23.1조),<sup>92)</sup>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한다.<sup>93)</sup> 중재절차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된다(제25.1조).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도중에 화해(settle)에 이른 경우에는 중재절차는 종료되고 화해조건이 중재판정문에 기재될 수 있다. 화해 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36.2조).

한편, 중재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convenience of the parties)와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제24.2조).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당사자나 전문가의 진술, 물품 검사, 재산 및 서류조사 등을 위하여 중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sup>94)</sup> 중재언어는 당사자 시

86) Arbitration Law. Art 15.6.

87) Arbitration Law. Art 15.9.

88) Arbitration Law. Art 20.4~5.

89) Arbitration Law. Art 21.1.

90) Model Law. Art 18. 모델법에서도 당사자의 동등한 대우 원칙과 충분한 기회의 부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91) Arbitration Law. Art 22.1.

92) Model Law. Art 19.1.

93) Arbitration Law. Art 23.2; Model Law. Art 19.2.

이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몽골어로 진행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언어를 합의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분쟁의 실제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재법이 정하고 있는데(제34.1조) 이는 UNCITRAL 모델법을 따른 것이다.<sup>95)</sup> 당사자가 지정한 법은 국내 법률과 똑같이 적용되지만 당사자는 국제거래에 보편적으로 승인된 상관습과 같은 상인법(the Law Merchant, or Lex Mercatoria)을 선택할 수 있으나<sup>96)</sup> 그러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sup>97)</sup> 중재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claimant)이나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제27.1조). 신청절차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답변서에는 당사자가 그 요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다. 피신청인(respondent)은 신청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승인, 거절(refuse), 화해, 반대신청(counter claim) 등을 할 수 있으며(제27.3조), 중재법은 당사자가 청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고 있다(제27.6). 그리고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몽골 중재법에서는 법원의 지원과 협조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실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sup>98)</sup>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당사자가 비용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제38.2조).

##### (5)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중재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위해서 내려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다. 몽골에서 중재판정문의 작성은 모델법을 따르고 있는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다수결에 따라 판정하며(제35.1조), 중재판정문은 중재인 전원이 서명한 문서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제37.1조). 다만 일부 중재인의 서명이 결여된 경우에도 그 이유가 기재되고 중재인의 과반수가 서명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성립한다(제37.2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제37.4조), 중재판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물론 그 승계인도 다투지 못하며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sup>99)</sup> 다만, 오기 등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은 판정 후 30일내에 정정될 수 있으므로,<sup>100)</sup>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오기나 기타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9.1조). 중재비용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정에 포함

94) Arbitration Law. Art 24.3.

95) Model Law. Art 28.1.

96) 김선정, 진개논문, p.201.

97) Batzaya Bodikhun and Petr Yuen, op. cit., p.99.

98) ibid, p.103.

99) Arbitration Law. Art 37.5.

100) 몽골 중재법 제39조의 중재판정의 정정과 해석에 관한 규정은 모델법 제33조와 비슷하다.

시키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이 일부가 인용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제41조).

한편 중재판정은 중재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제40.2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지 항소법원에 그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3조). 중재판정이 결정되면 피신청인은 중재판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다른 당사자는 항소법원에 그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42.2조). 항소법원은 중재판정이 무효이거나 일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43조). 그러나 법원이 중재판정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sup>101)</sup> 몽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과 중재법 제8장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제3.2조), 몽골 중재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경우는 몽골이 당사자가 된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3조). 즉 몽골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체약국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몽골에서는 이론적으로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이 어렵지 않으며, 몽골 법원도 외국중재판정에 집행에 비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IV. 중국과 몽골의 중재제도에 대한 개선점

### 1.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 및 개선방안

#### (1)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

우선 중국의 중재기관은 국내중재의 경우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涉外중재의 경우에도 ‘중국국제상회’가 사실상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고, 실질적 책임자는 대개 고위 당직자들이 담당하고 있다.<sup>102)</sup> 중재법은 국내중재와涉外중재를 포괄하지만涉外중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중재기관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다. 특히涉外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취소나 집행 거부시에 상급법원에 보고하는 보고제도를 운영하여 하급법원의 권한남용을 줄이고 있다. 중재법에는 임시중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중국도 뉴욕협약의 체약국이므로 중국의 법원이나 중재기관들도 외국에서 내려진 임시중재판정에 대하여 중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sup>103)</sup> 중국내에서 외

101) Arbitration Law. Art 42.7.

102) 김용길, 전계논문, p.135.

103) 最高人民法院關於人民法院處理與涉外仲裁及外國仲裁事項有關問題的通知, 法經發[1987]5号, 發布及執行日期: 1987.4.10.

국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임시중재는 효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sup>104)</sup> 아울러 중국 중재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중재절차 중에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권유하여 직접 조정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조정제도가 현실적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중국의 중재제도에는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국의 중재규칙에는 CIETAC와 SHIAC 등이 있는데 이러한 중재규칙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서 당사자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SHIAC의 중재규칙이 선진중재제도를 먼저 받아들이고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분쟁을 해결할 때에 SHIAC의 중재규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중국 법원의 중재에 대한 간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중재제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으로써 중재제도의 독립성과 민간성을 해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재제도의 중국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재에 대한 사법감독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사법 감독체제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중재판정의 취소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택적 중재합의가 그 형식적인 하자만을 가지고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섯째, 현재 CIETAC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는 대부분 중국인이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서 외국 당사자에게는 언어상의 문제 등으로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몽골 중재제도의 특징 및 개선방안

### (1) 몽골 중재제도의 특징

2003년에 몽골이 중재법을 제정하면서 UNCITRAL 모델법을 폭 넓게 받아들임으로써 중재에 친화적인 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2006년의 UNCITRAL 모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몽골 정부나 중재기관에서 이를 몽골 중재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몽골 중재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몽골 중재법이 제정될 때에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몽골은 국내분쟁과 국제분쟁을 해

104) 오원석·김태경, 전제논문, p.96.

결할 수 있도록 임시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다. 중재법에는 중재비용에 대하여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몽골의 중재규칙에는 중재인의 수당이나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없는데,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몽골 중재법상으로는 중재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2) 몽골 중재제도의 개선방안

현재 몽골의 중재제도에는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몽골의 중재법이 제정된지 1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몽골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 실무적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비하여 몽골은 아직까지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몽골 중재법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분하지 않는데 이를 국내 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제협약을 이해하고 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중재인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유능한 중재인을 확보하고 중재업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상응하는 수당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몽골의 중재규칙에 중재인의 수당이나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인들과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중재제도의 대한 신뢰도를 얻기 위하여는 현재 몽골 상공회의소에 있는 몽골 중재원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사법부를 불신하면서도 법원을 선호하는 몽골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몽골의 중재법과 중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법체계면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정합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에 만연하려고 하는 부패를 혁파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反)부패 개혁과 從嚴治黨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자급 고위 관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들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국제적으로는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2012

년부터는 민사소송 등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소산권주택에 대한 투기는 많은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이래 20여 가지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양국 교역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향후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보다 중재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중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선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무역보험연구』, 통권 제15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년 9월.
-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23권 제4호, 韓國仲裁學會, 2013.12, 55-76 (22 pages)
- 김용길, “中國 勞動爭議의 仲裁에 관한 考察”, 『仲裁研究』, 제19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09.
- 김용길, “중국 농지임대차분쟁의 중재에 관한 고찰”, 『仲裁研究』, 제21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11.
- 김용길, “中國의 仲裁制度에 관한 管見-中國 物權法の 制定을 中心으로-”, 『仲裁研究』, 제17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07.
- 목영준 (2011), 『상사중재법』, 박영사.
- 박규용·서세걸, “중국 중재제도의 새로운 발전과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25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5.
- 박영길,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중재인의 자기관할권판정의 원칙”, 『仲裁研究』, 제13권 제2호, 2004.
- 송수련, “CISG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사례 연구-중국과 홍콩 당사자간 분쟁을 중심으로-”, 『仲裁研究』, 제23권 제4호, 韓國仲裁學會, 2013.
- 신군재·김경배, “중국기업과의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13권 제2호, 2004.



- 신창섭, “우리나라와 중국 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16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06.
- 오원석·김태경, “중국상사중재의 사법감독실태와 개선방안”, 『仲裁研究』, 제20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0.
- 우광영,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仲裁研究』, 제16권 제1호, 韓國仲裁學會, 2006.
- 유병욱, “한국과 몽골의 무역과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貿易商務研究』,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 尹晋基, “중국 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 이경화, “중국의 상사중재관할권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 이경화·서경, “중국 중재조정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 李萬熙, “새로이 제정된 中國의 仲裁法에 관한 연구”, 『법조』, 482호, 1996.
- 이시환, “중국에서의 국제상사중재합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이주원,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에 관한 소고”, 『仲裁研究』, 제15권 제3호, 韓國仲裁學會, 2005.
- 장경찬, “중국에서 내국인 간의 투자계약 관련 중재 사례 검토”, 『仲裁研究』, 제24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4.
- 최석범,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仲裁研究』, 제14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04.
- 하현수, “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仲裁研究』, 제26권 제2호, 韓國仲裁學會, 2016.

## 2. 외국문헌

- 沈四寶·于健龍, 中國仲裁年度報告(2013~2014), 『法律出版社』, 2016.
- 黃進·宋連斌·徐前權, 『仲裁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16.
- 袁杜娟, 上海自貿區仲裁糾紛解決機制的探索與創新, 『法學』, 2014年 第9期.
- 趙駿, 國際投資仲裁中“投資”定義的張力和影響, 『現代法學』, 第36卷 第3期, 2014年 5月.
- 何其生, 國際商事仲裁司法審查中的公共政策, 『中國社會科學』, 2014年 第7期.
- 王勇, 論《聯合國海洋法公約》中“強制性仲裁”的限制條件-兼評菲律賓單方面就中菲南海爭議提起的仲裁-, 『政治與法律』, 2014年 第1期.

- 余勁松，國際投資條約仲裁中投資者與東道國權益保護平衡問題研究，「中國法學」，2011年，第2期。
- 肖芳，國際投資仲裁裁決在中國的承認與執行，「法學家」，2011年 第6期。
- 蔡從燕，國際投資仲裁的商事化與“去商事化”，「現代法學」，第33卷 第1期，2011年 1月。
- 江平，“중국의 중재제도”，「仲裁研究」，제13권 1호，韓國仲裁學會，2003。
- 黃世席，國際投資仲裁中最惠國條款的適用和管轄權的新發展，「法律科學(西北政法大學學報)」，2013年 第2期。
-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民法室編，「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條文說明-立法理由及相關規定」，北京大學出版社，2007。
- 郭玉軍，論國際投資條約仲裁的正當性缺失及其矯正，「法學家」，2011年，第3期。
- 余民才，菲律賓提起南海爭端強制仲裁程序與中國的應對，「現代國際關係」，2013年 第5期。
- 蕭凱，羅驍，仲裁第三人的法理基礎與規則制定，「法學評論(雙月刊)」，2006年 第5期(總第139期)。
- 余民才，海洋爭端強制仲裁程序及我國的應對策略-以中菲南海爭端強制仲裁事件為例，「法商研究」，2013년 第3期(總第155期)。
- 石川明·三上威彥，「比較裁判外紛爭解決制度」，慶應義塾大學出版會，1997。
- 小島武司，「仲裁法」，青林書院，2000。
- 李衡東，相互性による法とその執行，「神戸法學雜誌」，第46卷 4号，神戸法學會，1997。
- 胡光輝，“國際商事仲裁管理をめぐる實效性の確保-中國國際商事仲裁における證據と暫定的保全措置を中心に-”，「早稻田大學法學會誌」，제55권，早稻田大學法學會，2005。
- Jason Pien, “Creditor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l Awards in China”, 45 Colum. J. Transnat'l L. 586, (2007).
- William Heye, “Forum Selection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China - Chinese Courts vs. CIETAC”, 27 Hastings Int'l & Comp. L. Rev. 535 (2004).

## ABSTRACT

### A Study on the Comparative Method of Arbitration Law of China and Arbitration Law of Mongolia

Yong-Kil Kim

Recently, China has brought many political, econom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order to complete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y.” In terms of legal system, they make much effort to seek compatibility and stability of law and order. China recognizes that the breakdown of corruption, which is rampant in society, is an essential short-cut for national development. To realize anti-corruption reformation, i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of relatives and close officials of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Recently, China has suffered from expanded trade disputes internationally and has also experienced severe management-labor conflicts domestically due to economic recession. From 2012 onward, civil lawsuit and other litigations have increased sharply. Also, they face severe conflicts in the land system. It is expected that many disputes arise due to speculation on rural housing.

Meanwhile, Mongolia expand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in mutual cooperation since their diplomatic relation in 1990 by entering more than 20 treaties and agreements. As Mongolia has rich natural resources and Korea is equipped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two countries have opportunities to develop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ve relations.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instead of litig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Mongolia. This study would be helpful to figure out desirable methods for dispute settlements in case of trade disputes among Korean companies that would advance into China and Mongolia.

**Key Words** : Arbitration Agreement, China Arbitration, Arbitration Law of China, Arbitration Law of Mongolia, UNCITRAL Model Law